

의안번호	2213388
의 퇴 인	이학영의원
회 답 일	2026.1.13.
추계번호	25B552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조의2(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신설	환경부장관은 지역별 물 수요량 및 공급 가능량, 가뭄 발생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함. 수립된 설치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함)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제2항)	의무규정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제3항)	재량·의무규정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2	안 제15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	환경부장관(하·폐수처리수 이용사업 대행기관을 포함한다),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기술관리인을 두어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함. 다만,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설계·시공업자에게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0조의2(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5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역별 물 수요량·공급 가능량 및 가뭄 발생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은 기술관리인을 두어 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과 업무 위탁 대가 지급 등으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행법 제10조 및 제11조¹⁾에서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주체를 공공하수도관리청(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은 724개소, 공공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은 246개소임²⁾

1)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설치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의 범위 및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처리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와 온배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처리시설 용량 500m³ 이상 기준

□ 개정안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지역별 물 수요량·공급 가능량·가뭄 발생 전망 등을 고려한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물량 및 시설 용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현시점에서는 해당 사항들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 참고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처리시설 용량별 공사비의 단가는 [표 1]과 같음

[표 1]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공사비

(단위: 백만원)

구분	처리시설 용량(m³)									
	500	1,000	2,000	3,000	5,000	10,000	20,000	30,000	50,000	100,000
총인처리시설	505	760	1,146	1,456	1,969	2,967	4,469	5,680	7,682	11,573
염소소독	380	560	824	1,033	1,374	2,022	2,976	3,731	4,961	7,301
UV소독	448	648	938	1,164	1,528	2,209	3,196	3,966	5,206	7,530
생물학적탈질	2,160	2,207	2,475	2,837	3,395	4,254	5,580	6,908	10,419	16,215
RO	1,980	3,357	5,693	7,754	11,444	19,407	32,911	44,825	66,155	112,189

주1) 시설용량 구간 내 공사비는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출

주2) 상기 공사비는 2022년 기준임

주3) 재이용 용도별 표준공사비는 아래와 같이 단위공정을 참고하여 산출하되, 방류수 수질 및 재이용 용도에 따라 조정가능

·청소·화장실용수: 총인처리시설+염소소독

·세척·살수·조경·농업·하천 등 유지용수: 총인처리시설+UV소독

·지하수·공업용수: 전처리시설+RO+농축처리시설

주4) 총인처리시설은 응집, 침전, 여과, 부상 처리공정으로 구성된 공사비이며, 하·폐수처리시설에 시설된 경우 재이용 시설에서는 생략

주5) RO 시설은 전처리공정을 포함한 공사비임

주6) RO 농축수 처리시설 공사비는 RO 처리시설 용량(용수생산량)의 50%를 농·축수발생량으로 가정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부분의 사업비 산정기준' 중 유량조정조, 일차침전지, 생물반응조, 이차침전지, 소독 방류동, 농축, 탈수, 탈취 공정 금액 합계로 선정

주7) 송수펌프장 및 송수관로 공사비는 「수도시설 운영비 및 공사비 개략산정기준(2026.01, 환경부)」의 공사비 산정식 및 단가를 적용하고 해당년도 생사잔물가지수를 적용한 물가상승을 반영

주8) 관리시설 및 부대시설은 별도로 산정하여 적용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